

청주지방법원 2020. 9. 25 선고 2020가단389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9. 25.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C 공장용지 3,97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(나) 부분 27㎡ 지상 컨테이너박스 1동, (마) 부분 8㎡ 지상 닭장 1동을 철거하고, 위 도면 표시 ①, ④, ⑤, 6, 7, 8, 9, ⑪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1,000㎡를 인도하고,

나. 원고 선정당사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D 답 1,45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(다) 부분 18㎡ 지상 컨테이너박스 1동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

다. 선정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C, E 지상 건물 307.8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(라) 부분 40㎡를 인도하고,

라.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11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. 6. 1.부터 위 가. 나. 다.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○ 청구의 표시: 별지 '변경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·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수영

별지